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8. . . (제 회)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18.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26일 시행)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변경, 인용조문 변경 등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여 공공 목적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 제시

○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안 제11조)

원안 제8조제4항 주민협의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내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 제고

제 출 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18.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수정(안 제13조)**
 법 제5조의2는 종합계획,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규정으로 지원에 대한 직접적 근거 규정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에 따라 세워진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은 건축사협회 뿐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을 각각의 호로 분리하여 규정

○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명시(안 제2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을 10일로 명시하고 게시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7. 7 법률 13726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바. 기타 관련사항 :

조례 제 호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

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군수는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1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

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상관없이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고령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수 귀하</p>		
구비서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수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p>「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수 귀하</p>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수 귀하</p>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 령 군 수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8조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5만원	
- 3㎡ 이상 4㎡ 미만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0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0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0만원	
라)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5만원	
- 3㎡ 이상 4㎡ 미만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0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0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3만원	
- 1㎡ 이상 2㎡ 미만	38만원	
- 2㎡ 이상 3㎡ 미만	45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0만원	
- 3.5㎡ 이상 4㎡ 미만	60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0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00만원	
- 6㎡ 이상 7㎡ 미만	120만원	
- 7㎡ 이상 8㎡ 미만	140만원	
- 8㎡ 이상 9㎡ 미만	160만원	
- 9㎡ 이상 10㎡ 미만	180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3만원	
- 3㎡ 이상 4㎡ 미만	38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0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0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0만원
- 35㎡ 이상 40㎡ 미만	25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6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80만원
마.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60만원
- 연면적 20㎡ 이상	65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 에드벌룬(공) 1개	30만원
- 에드벌룬(공) 2개	50만원
- 에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에드벌룬 1개당 5만원 을 더한 금액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60만원
- 연면적 20㎡ 이상	7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 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1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3)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개정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1. 벽면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2,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2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3,000원	개당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10,000원	개당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대당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3,000원	개당
11. 창문 이용 광고물	3,000원	개당
12. 현수막		
가.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3. 벽보(50매당)	2,500원	
14. 전단(1,000매당)	2,500원	
15.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제·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5】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원)
1. 가로형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14,000
	- 연면적 6㎡ 초과 20㎡이하	20,000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
2. 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14,000
	- 연면적 3.5㎡ 초과 10㎡이하	20,000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38,000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300
4. 지주이용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14,000
	- 연면적 10㎡ 초과 20㎡이하	20,000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
5. 애드벌룬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 초과 40㎡이하	11,000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	

비고 : 등록 수수료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2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1㎡ 이상 1.3㎡ 미만		35만원	
- 1.3㎡ 이상 1.6㎡ 미만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2㎡ 이상 2.3㎡ 미만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3.7㎡ 이상 4.4㎡ 이하	22만원	
- 0.5㎡ 미만	7만원		- 4.5㎡ 이상 5㎡ 미만	25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 5㎡ 이상 6.0㎡ 이하	3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2㎡ 이상 2.3㎡ 미만	50만원		1) 일반 광고내용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6㎡ 이상 3.0㎡ 미만	75만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나. 현수막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 미만	8만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장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무과	
연 락 처	054-950-6332